

(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-참조2)

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55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05. 9. 14

발 의 자 : 김완창 의원 등 13인

1. 개정이유

-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2005. 8. 5
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·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『지방자치법 시행령』 제15조(의정활동비,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)
관련 별표6의 회기수당지급범위의 개정에 따라
- 『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』 제3조(회기
수당지급)②제1항에 의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
“70,000원”으로 하고,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.를 “100,000원”으로 개정,
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성남시 조례 제 호

성남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성남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“성남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”를 “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3조 제2항중 “70,000원”을 “100,00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성남시의회위원회의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3조(회기수당) ①(생략) ②제1항에 의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0,000원 으로 하고,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 한다.	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(회기수당) 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100,000원 -----, ----- -----.